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KEB하나 미소드림적금</b></p> <p><b>제 1 조 (내용생략)</b></p> <p><b>제 2 조</b></p> <p>①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미소금융대출 성실상환자로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부터 재산형성상품 참여추천을 받은 실명의 개인으로 1 인당 1 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②가입대상자는 가입시점에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제공하는 가입자격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</p> <p><b>제 3 조~제 9 조 (내용생략)</b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KEB하나 미소드림적금</b></p> <p><b>제 1 조 (내용생략)</b></p> <p><b>제 2 조</b></p> <p>①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미소금융대출 성실상환자 및 <b>채무조정 성실상환자로 서민금융진흥원</b>으로부터 재산형성상품 참여추천을 받은 실명의 개인으로 1 인당 1 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②가입대상자는 가입시점에 <b>서민금융진흥원</b>에서 제공하는 가입자격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</p> <p><b>제 3 조~제 9 조 (내용생략)</b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대상자 추가 및 운영기관명 변경</p>